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97 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 박완주·오영환·서영교

김민철 • 이정문 • 안규백

이성만 • 문진석 • 박영순

전혜숙 · 장경태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현재 경마,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세로서, 시·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.

그런데 경마,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, 민원유발,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%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장외발매소가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함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"(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"를 "[「지방세법」 제41조에 따른 장외발매소(이하 "장외발매소"라 한다)가 있는 시·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,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]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·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
- ④ 시·도지사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·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·군에 배분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일정액"을 "일정액(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

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·제4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·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시·	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
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	
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	
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	
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	
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	
는 금액을 관할 시·군 간의 재	
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	
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	
야 한다.	
1. 시·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	1
세·도세 <u>(화력발전·원자력발전</u>	[「지방세법」 제41조
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특	에 따른 장외발매소(이하 "장
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	외발매소"라 한다)가 있는
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	시·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
<u>다)</u> 의 총액	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
	<u>징수하는 레저세, 화력발전·</u>
	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
	시설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
	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
	<u>세는 제외한다]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특 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 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3.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·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 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시·도지사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·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 여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 ·군에 배분하여야 한다.

일정액(장외발매소가 있는 자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 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---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장 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가 장 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 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 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

<u>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</u> <u>여야 한다.</u>